【 학생성적 관리 및 소명 소위원회 시행세칙 】

[신설 2019년 3월 26일]

① **(목적)** 의과대학은 다음의 목적으로 성적관리 및 소명 소위원회를 둔다.

1. 학생들의 성적관련 상담 및 학습부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.
2. 학생들의 성적사정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.

② **(설치와 구성)** 위원장은 의학과장으로 하며, 학생성적 및 소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다. 당연직은 의학과장과 의예과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.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**(위원장)**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한다.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**(위원회의 기능)**

1. 학습부진학생, 유급대상자 및 제적대상자를 파악하여 각 학년 담임교수에게 통보한다.
2. 학생에게 학점이 확정되기 전 성적, 유급, 졸업유예, 퇴학 등의 결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.

⑤ **(회의)**

1. 학기 중간 또는 기말에 학생들의 성적을 파악하여 관리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선정한다.
2. 학생은 매 학기 성적을 소정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으며, 성적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명위원회에 소명을 신청할 수 있다. 이해상충이 있는 교수는 소명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
3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**(소명 건 결정 방법)** 위원회에서 수락된 소명건은 학장에게 보고하고 학장이 최종 심의한다.

부 칙

1.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